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16	6. / (총 15	5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경 찰청	과 장	김 병 우		02-3150-2083
정보3과	경 정	박 희 규		02-3150-2383
국토교통부	과 장	이 상 헌		044-201-3875
도로정책과	담 당 자	김 정 한		044-201-3887
보건복지부	과 장	이 중 규		044-202-2730
보험급여과	담 당 자	조 영 대		044-202-2733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미 라		044-202-1790
환자병상관리팀	담 당 자	안 제 현		044-202-1797

<u>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u>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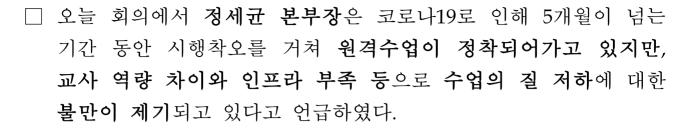












- 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게 원격수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다.
- □ 또한, 지난 6월말에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번에 다소 강도높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시설·업종별로 효과에 비해 방역 조치가 과도하거나 예측 못한 사각지대·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중수본에게 그간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보다 정교한 방역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방역조치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중수본에게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별 방역조치를 종합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등 2만2713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매장 내 이용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특히, 위 대상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진,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는 관내 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요양병원 등 179개소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면회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환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병인, 실습생 등)가 신규로 입소할 때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격리 후 결과(음성) 확인 후 입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도는 수도권 초·중·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30개 시·군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급식카드시스템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435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서울특별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10월 11일(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 한편,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3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9월 6일(일)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등 추석 명절 기간에 이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하여, '17년 추석 부터 면제되어온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 이번 추석 연휴기간(9.30~10.2)에는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요 불급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 휴게소·영업소 방역인력·물품 확충, 휴게소 운영업체·입점매장 지원 등
 - 정부는 국민들이 통행료 유료 전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VM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4 중증환자 등 치료대책

- □ 수도권의 재유행을 겪으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상,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최근 위중과 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위중·중증환자: (8.10.) 15명 (8.20.) 18명 (8.30.) 79명 (9.10.) 175명 (9.15.) 160명
 - 다만, 위중과 중증 환자 모두가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은 아니며,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여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 중환자 병상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대부분 위중 환자에서 나타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 그동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시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하였고, 이번 달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 병동'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내년 1분기까지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4백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총 6백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 하여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 도록 하겠다.
-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백 5십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 * (고용부) 근로복지공단(1), (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1) (복지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중앙의료원(3) (교육부) 강원·경북·경상·부산·분당서울·서울·전남·전북·제주·충북대병원(10)
 - 정원을 조정하여 약 5백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재지정**,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 9월 15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은 43개 병원에 4,1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1,531병상을 사용 중(37%)에 있다.
 - 생활치료센터도 정원 4,297명 규모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5일 기준 652명이 입소(15.2%)하여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환자 병상을 비롯하여 의료체계의 여력을 충실히 확충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려야 하는 기준도 좀 더 완화할 수 있게 된다.
 - 현재의 기준은 외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와 연동한 거리 두기 기준 재정비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5 병원 입원환자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 □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하고 있다.
 - 9월 21일(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취합검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단계별(1단계, 2단계)로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그룹검사 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











-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 이 사항은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9.15.)하여 검사 수가 및 기준 신설하였다.
- < 붙임 > 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수도권)
 -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수도권)

□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예: 150m² 이상)

사업주 종사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제외(별도 핵심 방역수칙 적용)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자 수칙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붙임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자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